

#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주요 변경사항

## □ 주요 변경사항

- (민간부담금 인정 범위) 기존현금 및 현물(사업자 소속 인력의 인건비) → 변경현금
  - \* 설비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, 타보조사업 등을 고려
- (지원대상자 선정) 선정평가 대상 및 가·감점 부여 시점 조정, 최종 우선순위 선정 시 적용하는 평가 산식 신설
  - (선정평가 대상 조정) 기존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자 전체 → 변경서면평가 결과(가·감점 반영)를 토대로 사업 계획 1.5배수 범위로 조정
  - (가·감점 부여 시점) 기존최종 선정 평가 이후 가점 부여,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반영 → 변경서면 평가 이후 가·감점 부여, 선정 평가 대상 범위에 반영
    - \* 선정평가 대상(사업 계획 1.5배수)을 조정함에 따라 가·감점 부여 대상자가 선정평가 대상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·감점 부여 시점 조정
  - (평가 산식 신설) 기존선정평가(가점 반영) 결과만으로 우선순위 반영 → 변경서면평가 결과도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종합평가 점수\*(산식) 신설
    - \* 최종종합평가점수 = (서면평가의 종합평가점수 × 0.3) + (선정평가점수 × 0.7)
- (지원 대상 사업비 비목) 기존인건비·직접비·위탁사업비·안전보건관리비 → 변경유형자산·건설비·운영비
- (보조금법 관련 규정 명시) 정산보고서 검증·회계감사,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중요재산 규정, 제재부가금 기준, 강제징수 기준 등
- (기타) 가·감점 정비, 일부 시설의 사업비 편성 상한액 조정·설정\* 등
  - \* 신재생에너지시설 분야 유형자산(사업비)의 60% 이내, 환경안전시설 및 기타시설 분야 각 최대 5천만원, 컨설팅업체 위탁사업비 최대 3천만원